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1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이연희 · 김정호 · 송재봉
박상혁 · 문진석 · 박해철
전용기 · 한민수 · 문금주
안태준 · 서미화 · 황 희
이광희 · 김남희 · 복기왕
박홍배 · 맹성규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사업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 설치하여 수십 년에 걸쳐 특정소수가 무기한·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궤도운행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음.

이에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그리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또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편의증진”을 “공공복리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한다.
- ⑧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 등 재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의 허가 관련 절차를 따른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 의 안전과 <u>편의증진</u> , 재해 방 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⑤ ----- ----- ----- ----- ----- <u>공공복리증진</u> ----- ----- ----- -----
⑥ (생 략) <u><신 설></u>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 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 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 라 정한다.
<u><신 설></u>	⑧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 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재허가를 받 아야 한다.
<u><신 설></u>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

<신 설>

차 등 재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의 허가 관련 절
차를 따른다.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확보
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